

2025년 하반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(타당성조사) 공고

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「2025년 하반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(타당성조사)」을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09월 24일

해양수산부장관

1. 추진목적

- 개도국 대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전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, 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
- 정부-민간 협력 기반 해양·수산·항만·해운 부문(이하 “해양부문”) 국제 감축사업 발굴을 통해 정부의 2030 NDC 달성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(지원대상)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할 역량이 있는 국내기업 등
 - (지원유형) 향후 해양부문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국내기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원
 - (지원부문) 국제감축실적(ITMO)이 발생할 수 있는 해양부문 국제 감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원
 - (사업분야) 식생연안습지(맹그로브 등) 조성·복원, 해양에너지 발전, 양식장 에너지효율 개선, 신재생에너지 보급, 친환경선박 보급,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, 스마트항만 구축, 해양폐기물 취급 및 처리 등
- * 상기 사업분야에 부재한 사업도 해양부문 해당 시 신청 가능
- (지원규모) 총 정부지원금 7억원 규모

구분	규모	지원비율	지원한도(1건당)
예비타당성조사	3건	총 사업비의 90% 이내	2.3억원

○ (공고 및 접수기간) '25. 9. 24.(수) ~ 예산 소진 시까지

- (1차) '25. 9. 24.(수) ~ 10. 15.(수) 17시까지

- (2차) '25. 10. 20.(월) ~ 11. 7.(수) 17시까지

- (3차 이후) '25. 11. 10.(월) ~ 11. 28.(금) 17시까지

* 공고 : 해양수산부(알림·뉴스-공지사항), 해양환경공단(소식정보-새소식-공지사항)

**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, 1차에서 마감될 경우 2차 이후는 미진행

3. 세부사항

○ (지원기간) 전담기관(해양환경공단) - 선정기업 협약 체결부터 사업 종료기간*으로 신청

*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이나,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

○ (지원항목) 지원가능한 총 사업비(아래항목의 합)에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정부지원금 산정

구분	지원항목
타당성조사 지원사업	타당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, 국내외 여비, 유인물비, 회의비(자문료, 통역료 등), 임차료, 위탁용역사업비 등

○ (민간부담금) 총 사업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

○ (지원자격)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등에 한함

< 국내기업 등 기준 >
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
- 비영리법인 및 그 밖의 법인
-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(외국 법인)
- 대한민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 등

○ (신청제한) 아래에 해당할 경우 참여 제한 및 신청서 반려 조치

< 신청자격 제한 기준 >

- 부도 또는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 - 휴·폐업 중인 경우
 -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30일 이상의 조업·영업·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
 - 제29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
 - 완전자본잠식 또는 최근 2년 연속 50% 이상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
- * 자본잠식률(%) = [(자본금-자기자본)/자본금] * 100

4. 공고 및 신청

- (제출방법) 공고문,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, 신청 양식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전자메일 접수
- 제출파일 (압축파일, 파일명 : 제출일_주관기업명.zip)

▶ 제출 메일주소 : climate@koem.or.kr

* 접수마감 시한까지 수신된 메일에 한함. 웹하드 또는 클라우드 연결 불가, 대용량 링크 파일로 접수가능. 접수된 신청서 및 전자파일 등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

** 접수 이후 자료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되어도 접수처는 별도로 보완 요청을 하지 않으며, 이후 사업평가나 선정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업에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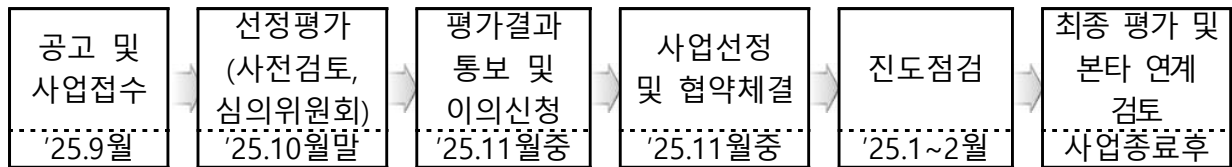
- (문의처) 해양환경공단 기후국제처 (02-3498-8678, climate@koem.or.kr)

- (제출서류) 붙임 양식 제출(붙임 참조)



5. 지원절차 및 일정

- 신청사업 평가하여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확정, 협약체결 후 이행 관리, 향후 본사업 연계 검토 등 실시



* 사업여건에 따라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6. 사업 선정평가

- (지원사업 평가기준) 신청기업 적정성(25점), 사업화 가능성(40점), 기대효과(35점)(지침 내 평가기준 참조)
- (평가방법) 주관기업 수행책임자(또는 참여구성원) 발표 및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신청사업 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*
 - * 위원장(위원 중 호선)을 포함한 5-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, 위원회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
- (선정결과 확정) 사업선정 결과 해수부 보고 후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

7. 협약 체결

-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전담기관(해양환경공단)과 업무협약 체결 필요
 -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
 - * 「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」 별지 제7호 서식
- (협약기간) 체결일로부터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
- (이행보증)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은 협약이행 보증서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보증서)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

8. 정부지원금 지급 및 진도관리

- (지원금 신청) 정부지원금 신청 시에는 정부지원금 반환 의무 이행 보증(보험)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
 - * 정부지원금 지급범위 및 시기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결정

- (진도점검) 지원사업의 진행상황, 사업비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수시 점검(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가능)

9. 최종평가

- (최종평가)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“성공”, “실패”, “평가불가*” 판정
 - * 천재지변, 상대국 관련법령 제·개정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 진행 불가 시
- (성공, 평가불가)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실시
- (실패)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

10. 결과물 활용

- 평가결과 “성공”으로 판정된 경우 결과(최종보고서 국문, 요약본 국·영문, 대상국 언어)를 전담기관(해양환경공단)에 제출
- 지원기업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연계 추진을 고려하여야 하며, 연계 최종 확정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름
- 전담기관(해양환경공단)은 지원기업이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원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 필요

11.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·협약 취소
-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비용의 항목 및 인정기준 등은 「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」에 따르며,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이 부담
- 영어 이외의 현지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에 대한 공증 및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법인감 날인 후 제출
- 지원기업은 「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」을 숙지하고, 관련

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

-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이 부담
-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

○ 동일 점수일 경우, 대한민국과 국제감축 관련 논의가 진행된 국가 우선 선정

< 국제감축 협의 진행국가 >

베트남, 가봉, UAE, 페루, 모로코, 스리랑카, 가나, 방글라데시, 조지아,
라오스, 인도네시아, 방글라데시, 캄보디아, 말레이시아, 온두라스, 파나마